

보험의 임원퇴직금 지급 가능 근거

1. 종신보험 등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158(2016.11.15)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2. 저축성보험

[문서번호] 기획재정부소득-109(2011.03.28)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하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피보험자(퇴직임원)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저축성보험(임원퇴직 당시 저축성보험의 평가액)은 퇴직 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함.

CEO 정기보험 납입보험료(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료)의 법인 손금 처리 근거

CEO 정기보험의 납입보험료 손금 여부에 대한 과세관청 유권해석

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2015.04.20)

[질의]

정년퇴직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창업주 대표이사과 그에 준하는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경영인정기보험 상품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보험료의 자산처리 또는 손금산입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서면법인 2020-3181(2020.08.14)

[제목]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질의]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경영인 정기보험, 만기환급금은 없으나 중도해지 시에는 해지환급금이 있음)에 가입하는 경우 납입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회신]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